

[별표 2] HS품목분류의견서 변경 일부개정안

번호	개정 전			개정 후			수정사항
1	0307.99	1.	동결건조된 갑오징어[세피아 오피시날리스 (<i>Sepia officinalis</i>)] < 중략 > 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	0309.90	1.	동결건조된 갑오징어[세피아 오피시날리스 (<i>Sepia officinalis</i>)] < 중략 > 통칙 제1호(제3류 주 제3호) 적용	○ 제0309호(어류 등 수생동물의 분말) 신설에 따른 변경 - 0307.99/1을 0309.90/1로 대체 - “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”을 “통칙 제1호(제3류 주 제3호) 적용”으로 대체
2	0410.00	1.	프로폴리스 < 중략 > 통칙 제1호 적용	0410.90	1.	프로폴리스 < 중략 > 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	○ 제0410.10호(식용 곤충)호 신설로 제0410호 소호 구분 - 0410.00/1을 0410.90/1로 대체 - “통칙 제1호 적용”을 “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”으로 대체
3	1515.90	1.	아라키돈산(ARA) 오일 < 중략 > 통칙 제1호 , 제4호 및 제6호 적용	1515.60	1.	아라키돈산(ARA) 오일 < 중략 > 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	○ 제1516.60호(미생물성 지방) 소호 신설로 이동 - 1515.90/1을 1515.60로 대체 - “통칙 제1호, 제4호 및 제6호 적용”을 “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”으로 대체
4	2106.90	17.	니코틴 추잉껌 < 중략 > < 신설 >	2404.91	1.	니코틴 추잉껌 < 중략 > 통칙 제1호(제21류 주 제1호바목) 및 제6호 적용	○ 제2404호(비연소 담배 및 니코틴 함유제품) 신설로 이동 - 2106.90/17을 2404.91/1로 대체 - “통칙 제1호(제21류 주 제1호바목) 및 제6호 적용” 신설

5	2106.90	18. ~ 38.	< 생략 >	2106.90	17. ~ 37.	< 생략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106.90/17의 이동으로 재번호 부여 - 2106.90/18~38을 2106.90/17~37로 대체
6	2403.99	1.	담배캡슐 < 중략 > 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	2404.11	1.	담배캡슐 < 중략 > 통칙 제1호(제24류 주 제2호 및 제3호) 및 제6호 적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2404.1호(비연소식 담배제품) 신설로 이동 - 2403.99/1을 2404.11/1로 대체 - “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”을 “통칙 제1호(제24류 주 제2호 및 제3호) 및 제6호 적용”으로 대체
7	2403.99	2.	흡입용 담배 함유 제품(그림 1 참조) < 중략 > 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	2404.11	2.	흡입용 담배 함유 제품(그림 1 참조) < 중략 > 통칙 제1호(제24류 주 제2호 및 제3호) 및 제6호 적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2404.1호(비연소식 담배제품) 신설로 이동 - 2403.99/2을 2404.11/2로 대체 - “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”을 “통칙 제1호(제24류 주 제2호 및 제3호) 및 제6호 적용”으로 대체
8	2911.00	1.	과산화 케탈(Peroxyketals) < 중략 >			< 삭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2909호 및 제2911호 범위 변경으로 의견서 삭제 - 2911.00/1을 삭제
9	3002.15	1.	인간의 혈청 또는 혈장에 있는 HIV 바이러스 효소면역측정법(ELISA)에 의해 시험관내에 찾아내는 진단키트 < 중략 >	3822.19	2.	인간의 혈청 또는 혈장에 있는 HIV 바이러스 효소면역측정법(ELISA)에 의해 시험관내에 찾아내는 진단키트 < 중략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3822호 범위 확대(면역물질 함유 진단용 시약 포함) - 3002.15/1을 3822.19/2로 대체 - “통칙 제3호나목 참조”를 “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”으로 대체

			통칙 제3호 나목 참조			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	
10	3002.15	2.	지카 바이러스(Zika virus) 검사 진단용 키트 < 중략 > 통칙 제1호, 제3호 마목 및 제6호 적용 의견서 3822.00/1 참조	3822.12	2.	지카 바이러스(Zika virus) 검사 진단용 키트 < 중략 > 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 < 삭제 >	○ 제3822호 범위 확대(면역물질 함유 진단용 시약 포함) - 3002.15/2을 3822.12/2로 대체 - “통칙 제3호나목 참조” 를 “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” 으로 대체 - “의견서 3822.00/1 참조” 삭제
11	3002.15	3.	치쿤구니아 바이러스(Chikungunya virus) 검사 진단용 키트 < 중략 > 통칙 제1호, 제3호 마목 및 제6호 적용 의견서 3822.00/1 참조	3822.12	3.	치쿤구니아 바이러스(Chikungunya virus) 검사 진단용 키트 < 중략 > 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 < 삭제 >	○ 제3822호 범위 확대(면역물질 함유 진단용 시약 포함) - 3002.15/3을 3822.12/3로 대체 - “통칙 제3호나목 참조” 를 “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” 으로 대체 - “의견서 3822.00/1 참조” 삭제
12	3402.11	1.	도데칠벤젠술폰산(dodecylbenzenesulphonic acids) < 중략 > < 신설 >	3402.31	1.	도데칠벤젠술폰산(dodecylbenzenesulphonic acids) < 중략 > 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	○ 제3402호 소호 세분화(음이온성) - 3402.11/1을 3402.31/1로 대체 - “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” 추가
13	3402.13	1.	폴리올	3402.42	1.	폴리올	○ 제3402호 소호 세분화(비이온성) - 3402.13/1을 3402.42/1로 대체

			<p>< 중략 ></p> <p>< 신설 ></p>			<p>< 중략 ></p> <p><u>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</u></p>	<p>- “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” 추가</p>
14	<u>3402.13</u>	2.	<p>폴리올</p> <p>< 중략 ></p> <p>< 신설 ></p>	<u>3402.42</u>	2.	<p>폴리올</p> <p>< 중략 ></p> <p><u>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</u></p>	<p>○ 제3402호 소호 세분화(비이온성)</p> <p>- 3402.13/2을 3402.42/2로 대체</p> <p>- “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” 추가</p>
15	<u>3402.20</u>	1.	<p>액체형 조제품</p> <p>< 중략 ></p> <p>< 신설 ></p>	<u>3402.50</u>	1.	<p>액체형 조제품</p> <p>< 중략 ></p> <p><u>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</u></p>	<p>○ 제3402.20호 소호 변경</p> <p>- 3402.20/1을 3402.20/1로 대체</p> <p>- “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” 추가</p>
16	<u>3808.91</u>	1.	<p>중간조제품</p> <p>< 중략 ></p> <p>< 신설 ></p>	<u>3808.59</u>	1.	<p>중간조제품</p> <p>< 중략 ></p> <p><u>통칙 제1호 및 제6호(제38류 소호주 제1호) 적용</u></p>	<p>○ 제38류 소호주 “카보퓨란” 추가로 제3808.59호 이동</p> <p>- 3808.91/1에서 3808.59/1로 대체</p> <p>- “통칙 제1호 및 제6호(제38류 소호주 제1호) 적용” 신설</p>
17	<u>3808.91</u>	<u>2.</u>	<p>구충로션</p>	<u>3808.91</u>	<u>1.</u>	<p>< 좌동 ></p>	<p>○ 번호 재부여</p> <p>- 3808.91/2를 3808.91/1로 대체</p>
18	<u>3808.91</u>	<u>3.</u>	<p>개목걸이</p>	<u>3808.91</u>	<u>2.</u>	<p>< 좌동 ></p>	<p>○ 번호 재부여</p> <p>- 3808.91/3를 3808.91/2로 대체</p>

19	<u>3822.00</u>	1.	지카 바이러스(Zika virus) 검사 진단용 키트 < 중략 > 통칙 제1호 및 <u>제3호 나목</u> 적용 <u>의견서 3002.15/2 and 3002.15/3 참조</u>	<u>3822.12</u>	1.	지카 바이러스(Zika virus) 검사 진단용 키트 < 중략 > 통칙 제1호 및 <u>제6호</u> 적용 < 삭제 >	○ 제3822호 소호 세분화 - 3822.00/1을 3822.12/1로 대체 - “통칙 제1호 및 제3호나목 적용”을 “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”으로 대체 - “의견서 3002.15/2 and 3002.15/3 참조” 삭제
20	<u>3822.00</u>	<u>2.</u>	용혈 세정액 < 중략 > 통칙 제1호 적용	<u>3822.19</u>	<u>1.</u>	용혈 세정액 < 중략 > 통칙 제1호 및 <u>제6호</u> 적용	○ 제3822호 소호 세분화 - 3822.00/2을 3822.19/1로 대체 - “통칙 제1호 적용”을 “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”으로 대체
21	<u>3824.99</u>	<u>7.</u>	피부투여시스템 < 중략 > < 신설 >	<u>2404.92</u>	<u>1.</u>	피부투여시스템 < 중략 > <u>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</u>	○ 제2404호(니코틴 함유물품) 신설 - 3824.99/7을 2404.92/1로 대체 - “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” 신설
22	<u>3824.99</u>	<u>8</u> ~ <u>17,</u> <u>21</u> ~ <u>24</u>	< 생략 >	<u>3824.99</u>	<u>7</u> ~ <u>16,</u> <u>17</u> ~ <u>20</u>	< 생략 >	○ 번호 재부여 - 3824.99/8~17를 3824.99/7~16으로 대체 - 3824.99/21,22를 3824.99/17,18로 대체

23	3824.99	18.	전자담배용 카트리지 < 중략 > 통칙 제1호, 통칙 제3호(나) 및 통칙 제6호 적용 의견서 3824.99/19 및 8543.70/5 참조	2404.19	1.	전자담배용 카트리지 < 중략 > 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 의견서 2404.12/1 및 8543.40/1 참조	○ 제2404.1호(비연소식 담배제품) 신설로 이동 - 3824.99/18을 2404.19/1로 대체 - “통칙 제1호, 제3호(나) 및 제6호 적용” 을 “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” 으로 대체 - “의견서 3824.99/19 및 8543.70/5 참조” 를 “의견서 2404.12/1 및 8543.40/1 참조” 로 대체
24	3824.99	19.	전자담배용 카트리지 < 중략 > 통칙 제1호, 통칙 제3호(나) 및 통칙 제6호 적용 의견서 3824.99/18 및 8543.70/5 참조	2404.12	1.	전자담배용 카트리지 < 중략 > 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 의견서 2404.19/1 및 8543.40/1 참조	○ 제2404.1호(비연소식 담배제품) 신설로 이동 - 3824.99/19을 2404.12/1로 대체 - “통칙 제1호, 제3호(나) 및 제6호 적용” 을 “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” 으로 대체 - “의견서 3824.99/18 및 8543.70/5 참조” 를 “의견서 2404.92/1 및 8543.40/1 참조” 로 대체
25	3824.99	20.	화학품 < 중략 >			< 삭제 >	○ 의견서 3824.99/20 삭제
26	3907.20	1.	폴리아마이드와 폴리에테르 중축합물 (polyamide-polyether polycondensate) < 중략 > < 신설 >	3907.29	1.	폴리아마이드와 폴리에테르 중축합물 (polyamide-polyether polycondensate) < 중략 > 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	○ 제3907.21호(비스(폴리옥시에틸렌)테타포스포네이트) 신설에 따른 소호 세분화 - 3907.20/1을 3907.29/1로 대체 - “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” 신설

27	3907.20	2.	폴리에테르 폴리올 공중합체 < 중략 > < 신설 >	3907.29	2.	폴리에테르 폴리올 공중합체 < 중략 > <u>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</u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3907.21호(비스(폴리옥시에틸렌)메틸포스포네이트) 신설에 따른 소호 세분화 - 3907.20/2을 3907.29/2로 대체 - “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” 신설
28	4303.90	1.	희색곰의 전신 모피로 만들어진 러그(rug) < 중략 > <u>또한 의견서 제9705.00/1호, 제9705.00/2호 및 제9705.00/3호 참조</u>	4303.90	1.	희색곰의 전신 모피로 만들어진 러그(rug) < 중략 > <u>의견서 9705.22/1, 9705.29/1호 및 9705.29/2 참조</u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참조 의견서 소호 변경 반영 - “또한 의견서 제9705.00/1호, 제9705.00/2호 및 제9705.00/3호 참조” 를 “의견서 9705.22/1, 9705.29/1호 및 9705.29/2 참조” 로 대체
29	4412.94 or 4412.99	1.	직사각형 적층목재조각(길이 213cm, 폭 11.26cm, 두께 23.8cm) < 중략 > 제44류 주4 적용	4412.59 or 4412.99	1.	직사각형 적층목재조각(길이 213cm, 폭 11.26cm, 두께 23.8cm) < 중략 > <u>통칙 제1호(제44류 주 제4호) 및 제6호 적용</u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4412.94호에서 제4412.5호로 이동 - 의견서 4412.94/1 or 4412.99/1을 4412.59/1 or 4412.99/1로 대체 - “제44류 주4 적용” 을 “통칙 제1호(제44류 주4) 및 제6호 적용” 으로 대체
30	4418.20	1.	<u>문작용 패널</u> < 중략 >			< 삭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견서 4418.20/1 삭제
31	4418.60	1.	구멍이 뚫린 가문비나무/소나무/전나무(침엽수) 판자 < 중략 > < 신설 >	4418.30	1.	구멍이 뚫린 가문비나무/소나무/전나무(침엽수) 판자 < 중략 > <u>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</u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4418.60호에서 제4418.30호로 이동 - 의견서 4418.60/1을 4418.30/1로 대체 - “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” 신설

44	8517.70	1. ~ 5.	< 생략 >	8517.79	1. ~ 5.	< 생략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8517.70호(부분품) 세분화 - 의견서 8517.70/1~5를 8517.79/1~5로 대체
45	8517.70	6. 7.	< 생략 >	8517.71	1. 2.	< 생략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8517.71호(안테나 부분품) 신설 - 의견서 8517.70/6을 8517.71/1
46	8525.80	1.	카메라 장치 < 중략 > 통칙 제3호 (나) 및 통칙 제6호 적용	8525.89	1.	카메라 장치 < 중략 > 통칙 제1호 , 제3호나목 및 제6호 적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8525.81~83호(고속, 방사선 카메라 등) 신설로 세분화 - 의견서 8525.80/1을 8525.89/1로 대체 - “통칙 제3호 (나) 및 통칙 제6호 적용” 을 “통칙 제1호, 제3호나목 및 제6호 적용” 으로 대체
47	8525.80	2.	디지털 정지화상 카메라 < 중략 > < 신설 >	8525.89	2.	디지털 정지화상 카메라 < 중략 > 통칙 제1호 , 제3호나목 및 제6호 적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8525.81~83호(고속, 방사선 카메라 등) 신설로 세분화 - 의견서 8525.80/2을 8525.89/2로 대체 - “통칙 제1호, 제3호나목 및 제6호 적용” 신설
48	8525.80	3.	원격조정 방식의 4-회전날개 헬리콥터에 탑재된 디지털 카메라(14 MP) < 중략 > 통칙 제1호, 제3호나목 및 제6호 적용	8806.22	1.	원격조정 방식의 4-회전날개 헬리콥터에 탑재된 디지털 카메라(14 MP) < 중략 > 통칙 제1호(제88류 주 제1호) 및 제6호 적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8806호(무인기) 신설로 이동 - 8525.80/3을 8806.22/1로 대체 - “통칙 제1호, 제3호나목 및 제6호 적용” 을 “통칙 제1호(제88류 주 제1호) 및 제6호 적용” 로 대체

67	9508.90	1.	컴퓨터로 제어되는 동작 시뮬레이션 영화 시스템 < 중략 > < 신설 >	9508.24	1.	컴퓨터로 제어되는 동작 시뮬레이션 영화 시스템 < 중략 > <u>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</u>	○ 제9508.2호(놀이기구) 소호 세분화 - 의견서 9508.90/1을 9508.24/1로 대체 - “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” 신설
68	9705.00	1.	북극곰의 박제표본 < 중략 > 통칙 제1호 적용 <u>의견서 제4303.90/1호, 제9705.00/2호 및 제9705.00/3호 참조</u>	9705.22	1.	북극곰의 박제표본 < 중략 > 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 <u>의견서 4303.90/1, 제9705.29/1 및 9705.29/2 참조</u>	○ 제9705호(수집품과 표본) 소호 세분화 - 의견서 9705.00/1을 9705.22/1로 대체 - “통칙 제1호 적용” 을 “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” 으로 대체 - “의견서 제4303.90/1호, 제9705.00/2호 및 제9705.00/3호 참조” 를 “의견서 4303.90/1, 제9705.29/1 및 9705.29/2 참조” 로 대체
69	9705.00	2.	새 박제 2개 < 중략 > 통칙 제1호 적용 <u>의견서 제4303.90/1호, 제9705.00/1호 및 제9705.00/3호 참조</u>	9705.29	1.	새 박제 2개 < 중략 > 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 <u>의견서 4303.90/1, 제9705.22/1 및 9705.29/2 참조</u>	○ 제9705호(수집품과 표본) 소호 세분화 - 의견서 9705.00/2를 9705.29/1로 대체 - “통칙 제1호 적용” 을 “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” 으로 대체 - “의견서 제4303.90/1호, 제9705.00/1호 및 제9705.00/3호 참조” 를 “의견서 4303.90/1, 제9705.22/1 및 9705.29/2 참조” 로 대체
70	9705.00	3.	장식용 어깨에 부착한 엘크의 머리(cape) < 중략 > 통칙 제1호 적용	9705.29	2.	장식용 어깨에 부착한 엘크의 머리(cape) < 중략 > 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	○ 제9705호(수집품과 표본) 소호 세분화 - 의견서 9705.00/3을 9705.29/2로 대체 - “통칙 제1호 적용” 을 “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” 으로 대체 - “의견서 제4303.90/1호, 제9705.00/1호

			<u>의견서 제4303.90/1호, 제9705.00/1호 및 제9705.00/2호 참조</u>			<u>의견서 4303.90/1, 제9705.22/1 및 9705.29/1 참조</u>	및 제9705.00/2호 참조” 를 “의견서 4303.90/1, 제9705.22/1 및 9705.29/1 참조” 로 대체
--	--	--	--	--	--	---	---